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4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김민철・이상직・윤재갑

기동민 · 황운하 · 박영순

김철민 · 오영환 · 임오경

장철민 · 민형배 · 정성호

김승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대개 규모가 크고 수용인원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데, 만약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현행법 제33조제3항에서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4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공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 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 한 제품일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 마. 인증업무에 부정, 부실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 바. 경보단말장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 사.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6항)
- 아.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33조2제7항)
- 자.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안 제33조의2제8항)

민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발할"을 "발령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전파를 위해 제33조의2에 따른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 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 및 기술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 하여 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	
장 • 면장 • 동장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u>발할</u>	발정
수 있다.	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제33조의2에
	따른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
	<u>야 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 <신 설></u>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
	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
	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

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을 인증하여 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 기준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 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